

<자료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2)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1997년 총회보고)

전문가위원회는 이전 코멘트에 대한 회답으로서 (일본)정부에 의해 제출된 1996년 5월 31일 및 1996년 10월 30일자 보고서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와, 1996년 10월 14일자로 (일본)정부에 그 사본이 송부된 1996년 9월 30일자 일본노동조합총연맹(JTUC-RENGO)에 의한 코멘트에 유의하여 왔다.

종전 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제2차대전 이전 및 동 대전 기간 중의 협약적용에 관하여 大阪府特別英語教員組合(OFSET)이 제출한 1995년 6월 12일자 견해에 유의하였다. 그 청구에서는, 소위 군대 “위안소”에 억류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학대를 언급하고 이고, 협약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항에 포함되는 상황에 언급하고 있고, OFSET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학대는 (강제근로금지)협약에서 정해진 절대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왔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이러한 수용불가능한 학대는 적절한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는데, 동 협약은 협약 효력 발생일 이후 잠정적인 기간 동안 동 협약 제1조 (2) 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형태의 강제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 소환되었던 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해 장애연금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협약 및 위원회의 권한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된 구제를 명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 왔다. 이 구제는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경과한 시간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1996년 5월 31일자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서, 협약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대전시의 “위안부”의 것을 포함하여 전쟁에 관련한 청구권의 해결 및/또는 배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은 관련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따라서 그 문제는 일본과 그러한 협정의 체약당사자간에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쟁 “위안부”의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감을 표현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감정의 표시로서, (일본)정부는, 그러한 사실이 장래의 세대에 적절하게 전달되고 따라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쟁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정면에서 직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일본)정부는 “평화, 우호 교류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 왔다고 보고한다. 동 기금은 노사 쌍방을 포함한 일본 국민과 충분히 협력하여 제2차대전 시 “위안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보상 및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늘날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일본이 전쟁 “위안부” 문제에 성실하게 대처하여 왔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JTUC-Rengo)이 제출한 (강제근로금지)협약의 적용에 관한 코멘트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러한 조치는 만약 그것이 원활하게(smoothly) 실시된다면 피해자의 보상을 위하여 의미있는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점에 본 위원회는 유의하고 있다.

나아가 1996년 5월 31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는 大阪府特別英語教員組合(OFSET)이 제출한 1995년 8월 12일자 서한에만 의거하고 있으나,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일본)정부는 그 서한에 대해 코멘트할 적절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OFSET에 의한 서한 제출 이전인 1995년 3월에 이와는 별도로 같은 문제에 관하여 한국노동총연합(FKTU)이 ILO에 대하여 ILO 헌장 제24조에 기한 진정(representation)이 이미 제기되었고, (일본)정부는 본 위원회의 권고는 다른 진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왔다. 1995년 3월 20일 한국노총에 의해 이루어진 ILO 헌장 24조에 기한 진정제기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ILO 이사회가 이 진정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이 1996년 5월 30일자 서한에 의해 진정을 취하할 때까지 그 수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점을 유의하고 있다.

또한 협약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1996년 8월 UN차별방지및소수자보호소위원회 제48차 회기에서 전쟁 중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 및 노예제유사관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논의에 유의하여 왔다. 그 논의 과정에서 (강제근로금지)협약 제2조의 적용제외규정에 비추어 전쟁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협약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1979년에 위원회가 강제근로의 폐지를 위한 일반적 조사(General Survey of 1979 on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패러그래프 36에 기재된, 협약 제2조 (2) (d)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 또는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각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이나 그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에 관한 설명을 참조한다. 본 위원회는 긴급의 개념은 협약이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예기하지 못하였던 우발적 사건으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련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동 협약에서 규정된 예외의 한계와 관련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진정으로 긴급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강제된 서비스의 범위와 그것이 이용된 목적은 그러한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동 협약 제2조 (2) (a)에 의해 동 협약의 적용이 제외된 “병역의무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의 범위를 “순수한 군사적 성질의 작업을 위한 것”에 국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성에 관련한 제2조 (2) (d)는 -전쟁, 화재 또는 지진의 경우에- 어떠한 강제적 서비스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백지위임은 아니며 주민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본건은 협약 제2조 (2) (d) 및 제2조 (2) (a)에 의해 인정되는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에 의한 (강제근로금지)협약위반이 명백하게 있었다고 결론내린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25조 하에서 강제근로의 불법한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하고, 이 협약을 비준하는 모든 국가는 법령에 의해 과해진 처벌이 진정으로 적절하고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 본 위원회는 일본의 형법(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 제176조, 177조하에서 강박에 의한 간음 및 강간은 처벌가능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전쟁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표현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모든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자금을 이용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포함하여 동 기금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관련한 1996년 10월 30일자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공된 상세한 정보에 유의하여 왔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장차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